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혁신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금고에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금고의 부실 정도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등을 규정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20648호, 2025.1.7. 공포, 2025.7.8. 시행)됨에 따라 상근감사 도입 의무 금고의 기준을 정하고 적기시정조치의 일부 권한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고 이사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의무 위탁으로 인한 공명선거감시단의 의무 설치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금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금고 상근감사 의무 선임 기준 설정(안 제7조의2 신설)

- 상근감사 의무 선임 지역금고 기준을 상근감사 임기개시일 전 정기총회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천억원 이상으로 정함.

나. 금고 상근임원 선임 기준 등 개선(안 제7조, 제8조의2)

- 1) 상근임원 선임 기준 관련 자산은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평균잔액)’

에서 ‘상근임원 임기 개시일 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 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으로 변경함.

- 2) 재무구조 관련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개정된 법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날까지 그 조치를 종료하지 않은 금고는 상근이사장이 아닌 상근이사 1명만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함.

다. 금고 상근이사 성과평가 실시 금고 기준 설정(안 제8조의3 신설)

- 성과평가 실시 금고 기준을 상근이사 임기 개시일 전 정기총회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 정함.

라. 외부감사 의무 대상 금고 기준 설정(안 제49조제2항 신설)

- 외부회계감사 수감 의무 대상 금고의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으로 정함.

마. 공명선거감시단 의무 설치 관련 규정 폐지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기간 연장(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삭제, 제59조제2호의4 삭제)

- 금고 공명선거감시단 의무 설치 관련 구성 및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 금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일 전 60일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함.

바. 금고 상환준비금 관련 규정 정비(안 제16조제1항)

- 시행령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예치비율 관련 사항을 삭제함.

사. 재판상 대리인 선임시 등기 대상 추가(안 제30조제1항)

- 재판 등 대리인 선임시 등기 필요 대상에 기존 중앙회장, 신용공제 대표이사 2명 외 전무이사, 지도이사, 금고감독위원장 3명을 추가함.
- 아. 비업무용 자산 및 부실자산 인수가격 산정 등 규정(안 제47조의4, 제47조의5 신설, 제51조의2제6항 신설)
- 1) 비업무용 자산을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하는 자산, 적기 시정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자산, 금고가 합병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 등으로 정함.
 - 2) 부실자산 인수가격을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하되, 인수가격 확정이 불가할 경우 사후정산이 가능하도록 정함.
- 자. 직접 제재 직원 범위 규정(안 제47조의7 신설)
- 직접 제재 대상 직원의 범위를 금고의 전무 및 상무, 중앙회의 간부 직원으로 정함.
- 차. 적기시정조치 일부 권한 위임(안 제51조제2항 신설, 제56조의2, 제56조의3)
- 중앙회장에게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고 부실우려금고에 대해 적기 시정조치를 권고 또는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함.
- 카. 새마을금고복지회 관계 규정 정비(안 제51조의2제6항 신설, 제58조)
- 명칭 변경, 시행령에 위임된 복지회 사업 범위 등 세부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자산은 상근임원의 임기 개시일(법 제23조의2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한 때를 말한다) 이전에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미만인 금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을 각각 “미만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이상인 금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을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산이 500억원 이상인 금고로서 법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조치가 종료되지 않은 금고 : 이사장이 아닌 이사 1명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고의 상근이사장은 그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일 다음날부터 상근이 아닌 이사장으로 재임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 법 제18조제3항 후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금고”란 상근감사의 임기 개시일(법 제23조의2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한 때를 말한다) 이전에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000억원 이상인 지역금고를 말한다.

제8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사장의 임기 개시일(법 제23조의2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한 때를 말한다) 이전에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000억원 미만인 지역금고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상근이사의 임기 개시일(법 제23조의2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한 때를 말한다) 이전에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

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금고를 말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전날”을 “전날(법 제23조의2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로 하되,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일로 한다)”로 한다.

제10조의4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월 말일 현재 보유해야 하는 상환준비금 중 2분의 1 이상을 다음 달”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하는 상환준비금을 매월”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회장 및 신용공제대표이사는”을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금고감독위원장은”으로, “사무소 및 그 분사무소”를 “사무소의”로, “등기하여야”를 “등기해야”로 한다.

제47조의4를 제47조의6으로 하고,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비업무용 자산)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산
2. 금고가 법 제80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 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금고가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고정자산

4.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영개선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고정자산

제47조의5(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① 법 제73조의3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가 법 제73조의4에 따라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물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 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47조의4 앞의 “제4장 감독”을 삭제한다.

제47조의6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감독

제4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7(직원의 범위) 법 제7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직원을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9항의 금고의 전무, 상무

2. 법 제60조제3항제4호의 정관으로 정하는 중앙회 간부 직원
제4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종료일”을 각각 “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금고를 말한다.
제5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의 지정
2. 법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와 그 임직원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의 권고 또는 요구 및 권고 또는 요구에 따른 법 제80조의2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업무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회장은”을 “중앙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80조의2”를 “법 제80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80조의2 또는 제80조의4”를 “법 제80조의3 또는 제80조의5”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80조의5”를 “법 제80조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회장은”을 “중앙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회 또는 회장(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공제

대표이사가 중앙회를 대표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신용공제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은”을 “중앙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80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사무

⑥ 관리회사는 법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5까지의 부실자산의 매입·매각, 보전·추심 등 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⑦ 새마을금고복지회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공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6조의2 중 “법 제80조의3제2항”을 “법 제80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5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0조의4제1항”을 “법 제80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복지기구)”를 “(새마을금고복지회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복지기구(이하 “복지기구”라 한다)”를 “복지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복지기구”를 “복지회”로, “중앙회사업”을 “중앙회 사업”으로 한다.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는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복지회 회원”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복지회 회원에 대한 퇴직급여의 지급
2. 복지회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3. 복지회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
4.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복지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9조제2호의4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근이사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고에 재임 중인 상근이사장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상근임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 조 및 상근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u>이 경우 자산은 직전 사업연도 평균 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을 기준으로 한다.</u>	제7조(상근임원) ① ----- ----- ----- ----- ----- <u>. 이 경우 자산은 상근 임원의 임기 개시일(법 제23조 의2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한 때를 말한다) 이전에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u>
1. 자산이 500억원 이상 2,000억 원 미만인 금고로서 법 제79 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 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 1명	1. ----- -- <u>미만인</u> ----- ----- ----- ----- --
2. 자산이 2,000억원 이상 5,000 억원 미만인 금고로서 법 제7 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 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 2명 이하	2. ----- -- <u>미만인</u> ----- ----- ----- ----- ----- -----

3.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금
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
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
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을 충족하는 금고: 3명 이하
<신 설>

<신 설>

<신 설>

3. ----- 이상인 ---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산
이 500억원 이상인 금고로서
법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적
기시정조치를 받은 날부터 2
년이 되는 날까지 그 조치가
종료되지 않은 금고 : 이사장
이 아닌 이사 1명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고
의 상근이사장은 그 요건에 해
당하게 된 날 이후 최초로 소집
되는 정기총회일 다음날부터 상
근이 아닌 이사장으로 재임한
다.

제7조의2(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 법 제18조제3항 후단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금고”란
상근감사의 임기 개시일(법 제2
3조의2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
한 경우에는 위탁한 때를 말한
다) 이전에 법 제34조제2항에

제8조의2(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금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다음 각 호의 금고를 말한다.

1.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총자산(해당 사업연도의 평균 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을 말한다)이 2,000억원 미만인 지역금고

2. (생략)
<신설>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000억원 이상인 지역금고를 말한다.

제8조의2(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

-----.

1. 이사장의 임기 개시일(법 제23조의2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한 때를 말한다) 이전에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000억원 미만인 지역금고

2. (현행과 같음)

제8조의3(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상근이사의 임기 개시일(법 제23조의2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한 때를 말한다) 이전에

제10조의3(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직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기간은 임원 선거 공고일 전날부터 선거일 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 ⑧ (생략)

제10조의4(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명선거감시단(이하 “공명선거감시단”이라 한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 3명 이상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명선거감시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불법선거운동의 예방 및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금고를 말한다.

제10조의3(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직무 등) ① -----

--- 전날(법 제23조의2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로 하되,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일로 한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감시단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때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임무수행 중 입수한 자료를 유출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4. 공명선거감시단의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경우

5.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운영·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상환준비금) ① 금고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매월 말일 현재 보유해야 하는 상환준비금 중 2분의 1 이상을 다음 달 5일까지 중앙회에 예치해야 하며, 나머지의 상환준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유해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제30조(대리인의 등기) ① 회장 및 신용공제대표이사는 법 제64조의2제9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면 선임한 날부터 2주 내에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및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생략)

② (생략)

<신설>

제16조(상환준비금) ① -----
-----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하는 상환준비금을
매월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대리인의 등기) ①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금고감독위원장은

----- 사무소의 -----

----- 등기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의4(비업무용 자산)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신 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실채권을 변
제받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산

2. 금고가 법 제80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처분하
여야 하는 고정자산(임차보증
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3. 금고가 합병·사업양도·계약
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고정자산

4.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영개선 등으
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고정자산

제47조의5(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① 법 제73조의3에 따
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
하 “관리회사”라 한다)가 법 제
73조의4에 따라 부실자산을 인
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
건 또는 비업무용 자산에 대하
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제4장 감독

<신 설>

제47조의4 (생 략)

<신 설>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물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 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삭 제>

제4장 감독

제47조의6 (현행 제47조의4와 같음)

제47조의7(직원의 범위) 법 제7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직원을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9항의 금고의 전무, 상무
2. 법 제60조제3항제4호의 정관으로 정하는 중앙회 간부 직

	원
제49조(외부감사대상금고)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다음 각 호의 금고를 말한다.	제49조(외부감사대상금고) ① --
1. 법 제74조제3항 및 제79조제3항·제4항·제6항에 따른 검사나 회계감사 또는 경영평가 결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금고	1. ----- ----- -----.
2. 법 제74조제3항 및 제79조제3항·제4항·제6항에 따른 검사나 회계감사 또는 경영평가 결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금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고	2. ----- ----- ----- ----- 말 ----- ----- ----- -----
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여 이익금을 과대계상한 금고	가. ----- 말 ----- ----- ----- ----- -----
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나. ----- 말 ----- -----

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여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금고 <신 설>	----- ----- ----- -----
제51조(권한의 위임) ① (생략) <신 설>	② 법 제7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금고를 말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① (생략) <신 설>	제51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의 지정 2. 법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와 그 임직원에게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권고 또는 요구 및 권고 또는 요구에 따른 법 제80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업무
제5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5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	제5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 -----

함한다) 또는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정한다.

1. ~ 4. (생략)

<신설>

5. 법 제80조의2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80조의2 또는 제80조의4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무

7. 법 제80조의5에 따른 파산신청에 관한 사무

8. (생략)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중앙회는

1. ~ 4. (현행과 같음)

4의2. 법 제80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사무

5. 법 제80조의3

6. 법 제80조의3 또는 제80조의5

7. 법 제80조의6

8. (현행과 같음)

②

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정한다.

1. ~ 3. (생략)

③ 중앙회 또는 회장(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가 중앙회를 대표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신용공제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

--- 중앙회는 ---

1. ~ 3. (현행과 같음)

③ 중앙회는 ---

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7. (생략)

④·⑤ (생략)

<신설>

<신설>

제56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

1. ~ 7.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관리회사는 법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5까지의 부실자산의 매입·매각, 보전·추심 등 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⑦ 새마을금고복지회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공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6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법 제80조의3제2항에 따른 계약
이전 결정의 공고는 주된 사무
소 및 분사무소의 게시판에 게
시하고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
는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6조의3(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법 제80조의4제1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을 말한다.

1. 2. (생략)

제58조(복지기구) ① 법 제84조제

1항에 따라 중앙회는 금고 및
중앙회의 임직원(퇴직한 임직원
을 포함한다)과 그 가족에게 적
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들
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기구
를 설치할 수 있다.

법 제80조의4제2항-----

-----.

제56조의3(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법 제80조의5제1항-----

-----.

1. 2. (현행과 같음)

제58조(새마을금고복지회의 운영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복지
회”라 한다)는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
다. 이하 “복지회 회원”이라 한
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복지회 회원에 대한 퇴직급
여의 지급

2. 복지회 회원에 대한 공제급
여의 지급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기구(이하 “복지기구”라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복지기구에 출연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앙회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복지기구는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3. 복지회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

4.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복지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 복지회-----

-----.

④ ----- 복지회-----
----- 중앙회 사업-----
-----.

<삭 제>

제59조(규제의 재검토) -----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2의3. (생략) <u>2의4.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 기준:</u> <u>2024년 1월 1일</u> 3. ~ 13. (생략)	----- ----- ----- ----- --. 1. ~ 2의3. (현행과 같음) <u><삭제></u> 3. ~ 13.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3946